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며,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2월 12일자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19호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정부의 긴급대응 등에 따른 금지명령이나 검사명령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위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정부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으며, 식품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식품안전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정부의 긴급대응 등에 따른 금지명령이나 검사명령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시행토록 하고, 사업자 역시 식품 등의 생산·유통 등 각 단계별로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는 한편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최종생산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의 안전성 확보 의무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의 안전 관련 기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위해정보 및 당해 식품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해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정부는 신고로 인해 과징금 등이 직접적으로 관계행정기관에 귀속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해당 수입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식품 관련 사업자의 책무와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위해요소”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3. “위험”은 식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4. “식품관련사업자”는 비료, 농약, 사료,

사료첨가물, 동물용의약품, 기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업의 생산도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수입·운반·판매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식품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식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말한다.
6. “식품안전법령”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중 동물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염관리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

등에관한법률 및 기타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훈령 및 조례를 말한다.

7. “관계행정기관”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8. 1호부터 7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식품안전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식품안전관리의기본원칙)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 및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식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등) ①정부는 매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공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노력)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기준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상호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행정기관간의 상호협력)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복적인 자료요청·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또는 제2조제6호에 따른 식품안전법령을 개정하거나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관계행정기관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수사기관이 식품안전에 관련된 사건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식품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의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이며 책임있는 식품안전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제적 수준의 식품안전 관리기술의 확보와 국민의 식생활 증진을 위하여 식품관련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긴급대응체계 등) ①정부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긴급경보를 발령하고, 과학적으로 위험의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당해 식품등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③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긴급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 사업자 및 국민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긴급경보 발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관한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검사명령)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 섭취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다.

②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추적관리)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또는 식품의 원료가 되는 동물·식물·그 밖의 물질의 생산·제조·가공·수입·보관·운반·조리·판매(이하 '생산·유통등'이라 한다)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합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추적조사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식품등의 생산·유통등에 관련된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또는 식품원료가 되는 동물·식물 등의 제조·저장소 등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나 서류의

열람등 추적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결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에게 당해 식품등의 생산·유통등의 금지를 명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개발원료 또는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것을 원료로 제조·조리된 새로운 식품이 국민건강에 위해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자의 책무

제13조(안전성 확보) 사업자는 식품원료, 식품첨가물, 최종생산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식품등의 회수) ①사업자는 생산·유통등을 한 식품등이 식품안전법령에 위배되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당해 식품등을 즉시 회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식품등이 유통된 때에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품회수 현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련사업자에게 회수를 명하고, 당해 식품등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제15조(추적관리를 위한 자료의 기록·보관) ①사업자는 식품등의 생산·유통등 각 단계별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추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보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제16조(위험 평가)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련된 기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위험평가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위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기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위험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②위험평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분석·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운용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에 대한 시험·분석·연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의 식품안전관련 시험·분석·연구기관은 시험·분석, 연구·개발, 정보수집·공유 등에 대하여 기관 상호간 협의를 하여야 하고 상호간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시험·분석·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준·규격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 및 과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소비자·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한 식품구매를 위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등에 대하여 표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정부는 식품등의 생산·유통등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준(이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도입하거나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공개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조사·감시·단속·행정처분·처벌 등을 하거나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을 하는 경우에 당해 식품등이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식품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위해정보와 당해 식품등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당해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비자의 감시와 피해구제

제1절 소비자의 감시

제21조(소비자의 참여) ①정부는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식품안전 정보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의 요청에 관한 요건·절차와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신고자 보호) 국민은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나 또는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에의 신고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신고보상)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자료제출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등이 직접적으로 관계행정기관에 귀속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해당 수입의 일정율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식품분쟁조정

제24조(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식품안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위생적이지 않거나 유해한 식품의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중앙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기타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기타 위원의 위촉, 자격·임기, 제척·기피사유,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조정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1. 2이상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2.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였으나 당사자가 승복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제28조(분쟁조정) ①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의 섭취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을 조정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분쟁조정을 완료할 수 없어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④분쟁의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정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집단분쟁조정) ①동일한 식품등의 섭취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의 한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당사자로서 하여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당해 사건을 심사하여 집단분쟁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분쟁조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분쟁조정내용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의 집단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분쟁조정 효력) ①조정위원장은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

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1조(분쟁조정절차의 중지) ①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중에 일방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당사자는 소제기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으로 조정위원회가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법률) 식품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33조(설치)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위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관련 주요 정책의 종합·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및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식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3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석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②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된다.

제3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전문실무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전문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등에게 필요한 조사·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위원회의 운영지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등) ①위원회는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험연구기관에 위험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시험연구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수당 등) 위원회·전문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운영세칙)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벌칙

제44조(벌칙)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사업자가 제10조의 검사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당해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